



제 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 의무화 등 〉
■ 강득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920호)

2025. 11.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III . 검토의견	3
※ 참고자료	9
1.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 현황(2023)	9
2. 실내공기질 종합정보망(inair.or.kr)	10

I . 제안경위

【의안번호 제2211920호】

1. 발 의 자 : 강득구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5. 8. 1.
3. 회부연월일 : 2025. 8. 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 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됐음. 이에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10년 동안 기록·보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24년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지난 5년간 측정대행업체의 38%가 거짓 측정 등으로 영업정지, 벌금 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음. 실내공기질 측정결과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임.

이에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이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결과를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실내공기질 관리 정보망에 국민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및 법률 제20855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12조의6제1항).

Ⅲ. 검토의견

1.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 의무화

개정안은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이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10년간 기록·보존할 의무를 삭제하고, 측정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실내공기질의 측정) ①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u>10년 동안 기록·보존하여야 한다.</u>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실내공기질의 측정) ① -- ----- ----- ----- ----- <u>환</u> <u>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u>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현행법에서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참고자료 1)을 정하고,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① 실내공기질 유지·권고기준에 맞는 시설 관리¹⁾, ②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 수강²⁾, ③ 정기적 실내공기질 측정³⁾ 등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현행법령⁴⁾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10년간 보존해야 하고,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한 경우에는 기록·보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고 있음. 그러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10년간 보존하는 것만으로는 측정결과 관리가 어렵고 거짓·부정 측정을 방지할 수 없다는 지적이

1) **법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미세먼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에 대하여는 더욱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제6조(실내공기질 권고기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에 따라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권고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의2에 따른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그 권고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시설 소유자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대체·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2) **법 제7조(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등)**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조의6에 따른 측정망이 설치되어 실내공기질을 상시 측정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2. 제4조의7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이를 운영·관리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법 제12조(실내공기질의 측정)**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10년 동안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조의6에 따른 측정망이 설치되어 실내공기질을 상시 측정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2. 제4조의7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이를 운영·관리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시행규칙 제11조(실내공기질의 측정)** ① ~ ⑤ 생략

⑥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10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 경우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록·보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있음.

[「실내공기질 관리법」 상 다중이용시설 관리방안]

구분	관리자 교육	자가 측정	오염도 검사
근거	법 제7조	법 제12조	법 제13조
주체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또는 측정대행업체 (환경검사시험법 제16조제1항)	지방자치단체 (보건환경연구원)
내용	① 신규교육 (1년 이내 1회) ② 보수교육(3년마다 1회)	① 유지기준(1회/년) ② 권고기준(1회/2년)	① 유지기준* 준수 ② 자가측정 이행 및 교육 이수
처분	과태료(5백만원 이하)	과태료(5백만원 이하)	① 과태료(1천만원 이하) ② 개선명령(1년 내)

* PM10, PM2.5,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이에 개정안은 실내공기질 관리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가 자가측정 결과를 10년간 기록·보존하던 것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실내공기질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려는 것으로, 거짓·부정 측정을 방지하여 실내공기질 정보의 신뢰성 향상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의 의무가 “기록·보존”에서 “보고”로 변경됨에 따라, 현행 과태료 규정(법 제16조5)의 개정

5) 법 제16조(과태료) ①·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7. 생략

8.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하여 보존한 자

8의2. ~ 10. 생략

④ 생략

도 필요해 보임.

2.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 오염도검사 결과 등의 제출 의무화

개정안은 실내공기질 자가측정(법 제12조6) 및 오염도검사(법 제13조제1항, 제7항7) 결과 등을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6제1항).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법률 제20855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12조의6(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u>실내공기질의 종합적·체계적 관리를 위하여</u>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을 구축·	법률 제20855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12조의6(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제13조제1항과 제7항에 따른 보고 및 검사 결

6) 법 제12조(실내공기질의 측정) ①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10년 동안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조의6에 따른 측정망이 설치되어 실내공기질을 상시 측정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2. 제4조의7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이를 운영·관리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7) 법 제13조(보고 및 검사 등) ①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 및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⑦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오염물질을 채취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검사결과를 판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	개정안
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종합정보망을 구축·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관련 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u>과,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에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u> ② (현행과 같음)

현행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민들에게 실내공기질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정보 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inair.or.kr)(참고자료 2)을 2021년부터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자가측정 및 오염도검사 결과 중 일부가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 미등록되어 있어 기준 초과시설 관리 및 통계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⁸⁾, 자가측정을 수행하는 측정대행업체의 측정결과 관리가 미흡⁹⁾하여 이에 대한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

8) '25년 기준 '23년 당시 자가측정 의무 다중이용시설(24,755개소) 중 자가측정 결과(21,654개소) 및 오염도 검사 결과(2,426개소)가 정보망에 일부 누락

9) '20~'24 측정대행업체의 38%가 거짓 측정 등으로 영업정지·벌금 등 처분 받음

음. 이에 개정안은 자가측정과 오염도검사 결과의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 제출을 의무화하여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정보망 운영의 실효성을 향상시키려는 취지로 타당해 보임.

문 의 처
02)6788-5542

※ 참고자료

1.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 현황(2023)

번호	구분	시설군	개소수	규모 기준(연면적)
1	가. 일반시설	지하역사	678	모든 지하역사
2		지하도상가	72	2,000㎡ 이상
3		철도역사 대합실	29	2,000㎡ 이상
4		여객자동차터미널 대합실	25	2,000㎡ 이상
5		항만시설 대합실	6	5,000㎡ 이상
6		공항시설 여객터미널	18	1,500㎡ 이상
7		도서관	341	3,000㎡ 이상
8		박물관	198	3,000㎡ 이상
9		미술관	52	3,000㎡ 이상
10		대규모점포	1,269	모든 대규모점포
11		장례식장(지하 한정)	210	1,000㎡ 이상
12		영화상영관	581	모든 실내 영화상영관
13		학원	310	1,000㎡ 이상
14		전시시설(육내 한정)	85	2,000㎡ 이상
15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1,688	300㎡ 이상
16		목욕장	866	1,000㎡ 이상
		소계	6,428	
17	나. 민감계층 이용시설	의료기관	3,380	2,000㎡ 이상 / 병상 수 100개 이상
18		산후조리원	394	500㎡ 이상
19		노인요양시설	2,155	1,000㎡ 이상
20		어린이집	5,541	430㎡ 이상
21		실내어린이놀이시설	265	430㎡ 이상
		소계	11,735	
22	다. 실내주차장	실내주차장(기계식 제외)	6,592	2,000㎡ 이상
23	라. 그 외 기타시설	업무시설	9,106	3,000㎡ 이상
24		두 가지 이상 용도시설	20,111	2,000㎡ 이상
25		실내공연장	74	객석 수 1,000석 이상
26		실내 체육시설	147	관람석 수 1,000석 이상
		소계	29,438	
		총계	54,193	

2. 실내공기질 종합정보망(inair.or.kr)

□ 현황

- (개요) 실내공기질 실시간 정보 제공, 측정 결과 공개 등을 위해 운영
- (공개 중인 정보) 지하역사 PM_{2.5} 실시간 측정값, 국가측정망 실시간 측정값,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및 오염도 검사 결과 등

□ 누리집 및 앱 화면

인어어 누리집	인어어 누리집(지하역사 초미세먼지 정보)
인어어 앱(실내공기질 통합지도)	인어어 앱(지하역사 초미세먼지 정보)